

연구활동종사자 교육·훈련의 시간 및 내용(제9조제1항 관련)

| 교육 과정 | 교육 대상 | | 교육 시간 | 교육 내용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|---|
| 1. 신규 교육·훈련 | 근로자 | 가.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연구실에 신규로 채용된 연구활동종사자 | 8시간 이상 (채용 후 6개월 이내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법령에 관한 사항 · 연구실 유해인자에 관한 사항 · 보호장비 및 안전장치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 · 연구실 사고사례 및 사고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·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·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·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에 관한 사항 · 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|
| | | 나.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연구실이 아닌 연구실에 신규로 채용된 연구활동종사자 | 4시간 이상 (채용 후 6개월 이내) | |
| | 근로자가 아닌 자 | 다. 대학생, 대학원생 등 연구개발 활동에 참여하는 연구활동종사자 | 2시간 이상 (연구개발 활동 참여 후 3개월 이내) | |
| 2. 정기 교육·훈련 | 가.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저위험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 | 연간 3시간 이상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법령에 관한 사항 · 연구실 유해인자에 관한 사항 · 안전한 연구개발활동에 관한 사항 ·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·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에 | |
| | 나.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 | 반기별 6시간 이상 | | |
| | 다. 영 제7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연구실이 아 | 반기별 3시간 이상 | | |

| | | | |
|-----------------|--|--------|--|
| | 년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 | | 관한 사항 · 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|
| 3. 특별안전 교육 · 훈련 | 연구실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연구주체의 장이 인정하는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 | 2시간 이상 | · 연구실 유해인자에 관한 사항 · 안전한 연구개발 활동에 관한 사항 ·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· 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|

비고

- 제1호에서 "근로자"란 「근로기준법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.
- 연구주체의 장은 제1호에 따른 신규 교육 · 훈련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반기의 정기 교육 · 훈련을 면제할 수 있다.
- 제2호의 정기 교육 · 훈련은 사이버교육의 형태로 실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평가를 실시하여 100점을 만점으로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정하여 교육 이수를 인정한다.